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퇴원등 이후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4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퇴원등 이후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2

I. 개요

1.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퇴원등 이후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 개정안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u>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⑤ 제1항-----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

⑥ 제1항-----

-----.

제52조의2(지속치료필요대상자 치
료)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
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
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이하 “지속치료필요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퇴원등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하여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치료필요대상자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연계하는 등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생략)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 5. (생략) ④ ~ ⑧ (생략)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생략)	<u>상당하여야 한다.</u> ⑤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2조의2제1항----- ----- -----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 -----제44조, 제50조 또는 제52조의2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	---

□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¹⁾을 한 사람이 퇴원등²⁾을 할 때

1) 현행법에서 ‘입원등’은 입원과 입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입소는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의 용어로 보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에 관하여, 현행법은 제52조제2항³⁾에 따라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진단하는 경우에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퇴원등 후에도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생명과 안전의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 분류하여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치료 여부를 관찰하게 하고, 치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연계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지속치료필요대상자 본인의 정신건강 치료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설을 말한다.

- 2) 현행법에서 ‘퇴원등’은 퇴원과 퇴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퇴소는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의 용어로 보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한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규정 비교>

현행법	개정안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게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u>관할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u>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게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u>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u>
	○보건복지부장관은 통보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가 <u>치료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u> 하고, <u>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연계 조치</u> 하여야 함(이 업무는 위탁 가능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비용 지원하여야 함)

□ 다만,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퇴원등 후 관리 조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퇴원등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규정만 두고 있으나,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 분류되는 당사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는 자신이 퇴원하면서 이러한 부류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⁴⁾임.

4)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의 분류됨 자체를 다룰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를 위하여는 바람직하여 보이나, 예컨대 입원연장의 근거가 되는 제62조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두고 있지는 않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유사한 취지로서 현행법 제62조제3항5)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속치료필요대상자가 퇴원 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당사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연계시켜 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지속치료필요대상자가 퇴원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의무여야 하는 조치가 사전에 전제될 때 실효성이 있는 조치이나, 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속치료필요대상자가 퇴원 후에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항에 따른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함께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치료 경력을 국가가 추적관리하는 기간은 당사자에게 침해적일 수 있는 성질이므로 대략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이 추구하는, 퇴원후의 치료 연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서 외래치료 지원 및 정기적인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를 연계하여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⑥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7)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8)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9)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⑧ ~ ⑨ 생략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¹⁰⁾으로 정한다.

□ 한편,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한 퇴원후의 관리는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 및 자기 의사 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받아 추진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¹¹⁾.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소속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개정안 제52조의2제3항 또는 현행법 제83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퇴원 후 외래치료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는 전국적인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담당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 경우 센터가 경찰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퇴원 후 치료 관리 및 비용 지원은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법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개정안의 지속치료필요대상자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회계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입원·행정입원, 외래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의 진단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는 사전고지 및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또는 법률 개정안 목적 달성에 부적합한 수단임.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 등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개정안은 정신질환 치료 연속성 및 관리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외래치료지원 제도와 중복되므로, 외래치료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신건강 복지센터협회 및 경기도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나 치료 의지 없는 강제치료는 대단히 어려우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책임과 업무가 훨씬 가중될 우려가 있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어느 정신의료기관 퇴원자를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 규정하면 퇴원후에도 치료가 의무적인 그룹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지속치료필요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연계 뿐 아니라 지역 내 사례담당자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등의 접근법이 필요함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비자의 입원 후 퇴원환자에 대한 치료 강제는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대한정신장애인가족 협회	○개정안의 취지를 위하여는 지속치료필요대상자를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한 사람까지도 확대하여야 함.

문 의 처

02)6788-5498